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요건인 노후도 산정 시 노후·불량건축물과 함께 무허가건축물도 고려토록 하고,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요건인 건축물의 멸실·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판단 시에도 무허가건축물을 고려토록 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의 안전도를 제고하고, 재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이 보다 원활하게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노후·불량건축물”을 “노후·불량건축물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(이하 “무허가건축물”이라 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”로, “건축물의 수의”를 “건축물(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의 수의”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“노후·불량건축물”을 “노후·불량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”로 하며, 같은 표 제4호 후단 중 “노후·불량건축물”을 “노후·불량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384